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

‘정부의 원리’ 저자 양재진 연세대 교수

10월 13일 저녁 6시, 곧 시작합니다.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 철학

이 자리는 함께 묻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이 먼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보다 질문, 논쟁보다 경청이 있는 토론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로서, 발언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기록되어 사라지지 않고,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말과 태도로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정치포럼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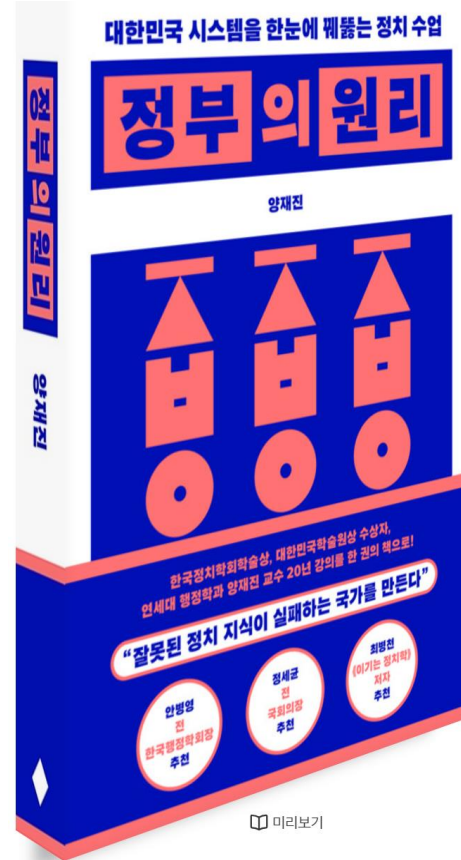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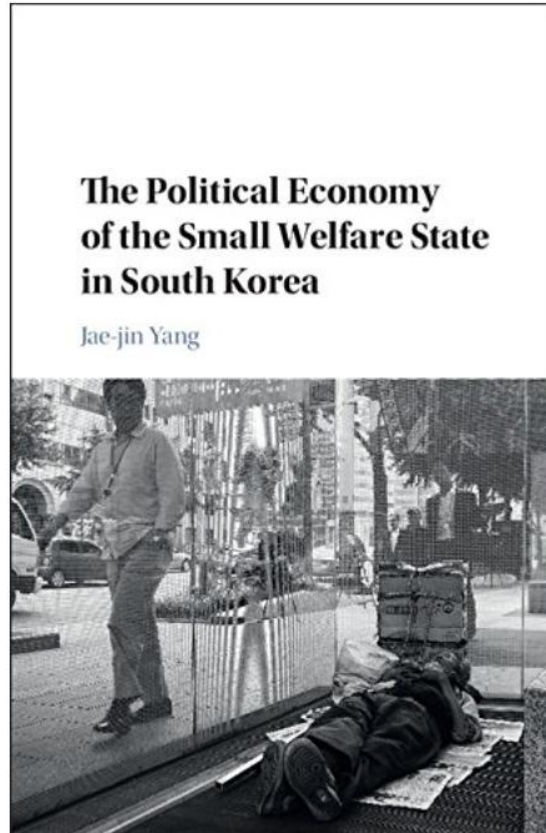
[개혁신당] 개혁신당 학습포럼 주경야독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

자유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의 길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5.10.13.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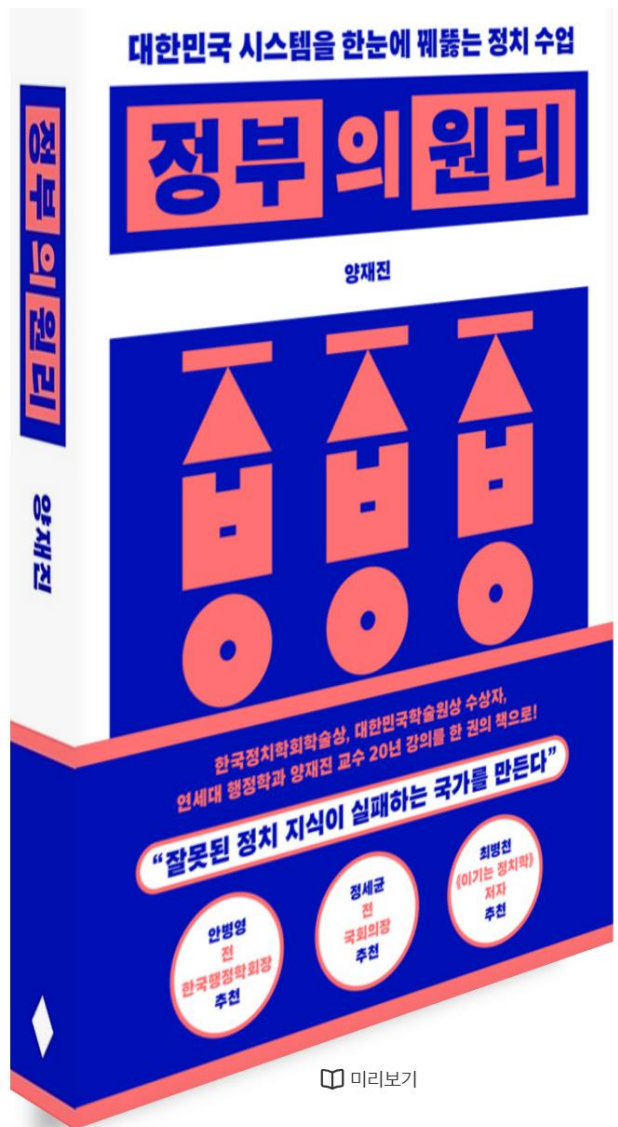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 미국 럿거스 대학교 정치학 박사

□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3)
-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 (2017)
- AAPA Akira Nakamura 최우수논문상 (2019)

□ 대표 저서

- 복지의 원리, 정부의 원리
-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20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장 정치,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장 민주공화국의 뿌리와 원리

3장 더 우월한 정부 형태가 있는가

4장 정당, 정치 시장의 기업

5장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뀔까

6장 의회의 다양한 얼굴

7장 국가관료제와 정치적 통제

8장 국가형식과 중앙-지방정부 관계

9장 헌정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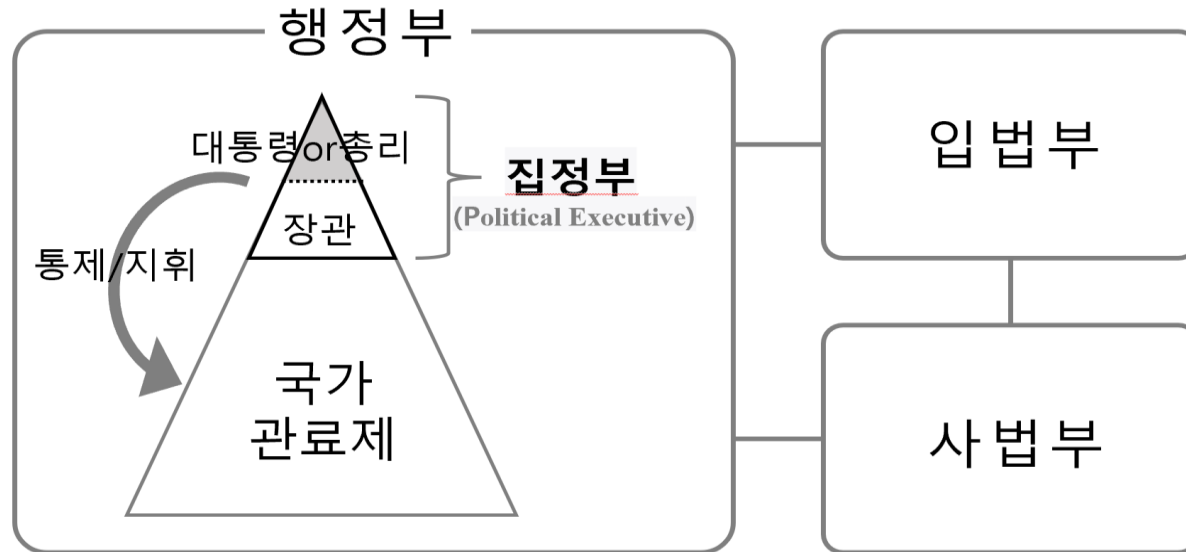
10장 다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만들기

+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

-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합적 행위(Hague and Harrop)**
 - 구속력 (binding)
 - 공권력 작용 (monopoly of legitimate use of physical force)
 - 권력 장악은 국가의 물리력에 대한 통제권 확보 의미/ 집정부(political executive) 장악이 핵심
 - legitimacy의 근거: 카리스마, 후광, 제사장, 선거경쟁에서 승리 + 헌법 + 적법절차(due process)
- **정치의 유형**
 - 독재 정치: 집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
 - 권위주의 정치: 반대의견을 억누르며 의사결정
 - 다수결 민주주의 정치: 다수결로 결정
 - 합의(협약) 민주주의 정치: 설득, 대화, 타협으로 결정

1장. 정부(Government)란 무엇인가?

-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
 - 헌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된 기관
 - 의회, 행정부, 사법부 + 지방정부
 - 정당? 언론? 시민단체?



- 단점 정부 (Unified Government)?
- 분점 정부 (Divided Government)?

-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제한된 정부 (limited government)

- 민주주의: Demos (People, 民) + Kratia (Cracy, 지배) = Democracy

- 왕이나 귀족이 아닌 일반 백성(평민)이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민주주의 성립
- 백성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시민
- 시민이 직접 결정과정에 참여하면 직접민주주의(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 시민이 대리자를 뽑아 이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면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공산주의국가의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국가에서의 대의민주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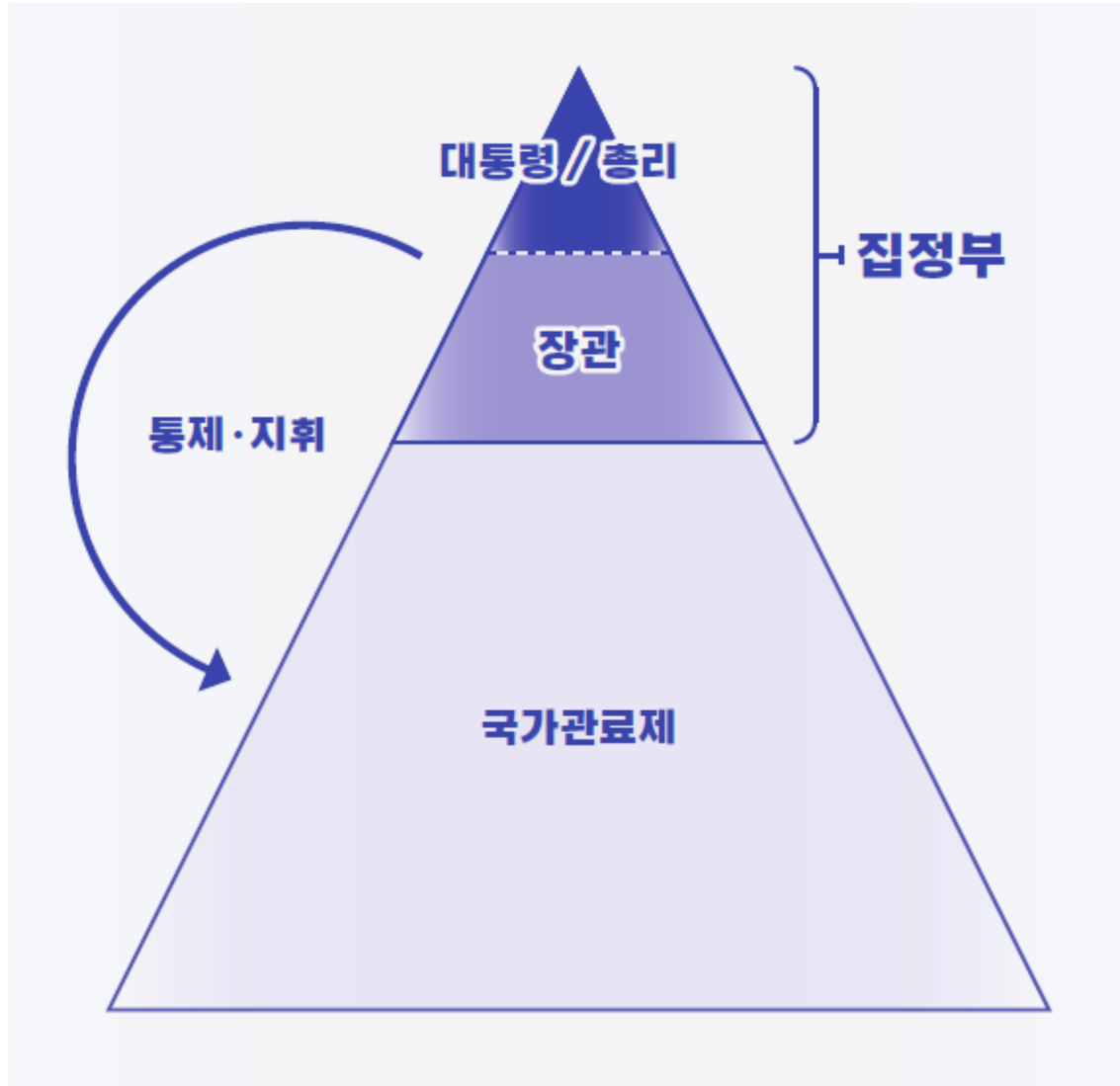
- 경쟁적 정치시장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곧 민주적 이상사회 실현?
- 다수의 압제(Tyranny of Majority) 문제 상존

민주 정부의 핵심은 다수의 절대 주권이며, 민주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는 필연적으로 소수를 억압할 권력을 갖게 된다. 절대 권력을 가진 개인이 그것을 오용하듯 다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우리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억압이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어느 개인이나 당파가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여론에 호소하자면 여론도 다수에 의해 주도된다. 입법부도 다수를 대표하며 맹목적으로 다수에 복종하기 때문에 입법부에 호소해도 소용 없다. 행정권에 호소하자니 행정권도 다수에 의해 임명된다. 공권력은 다수가 무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당신에게 가해지는 조치들이 아무리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해도 당신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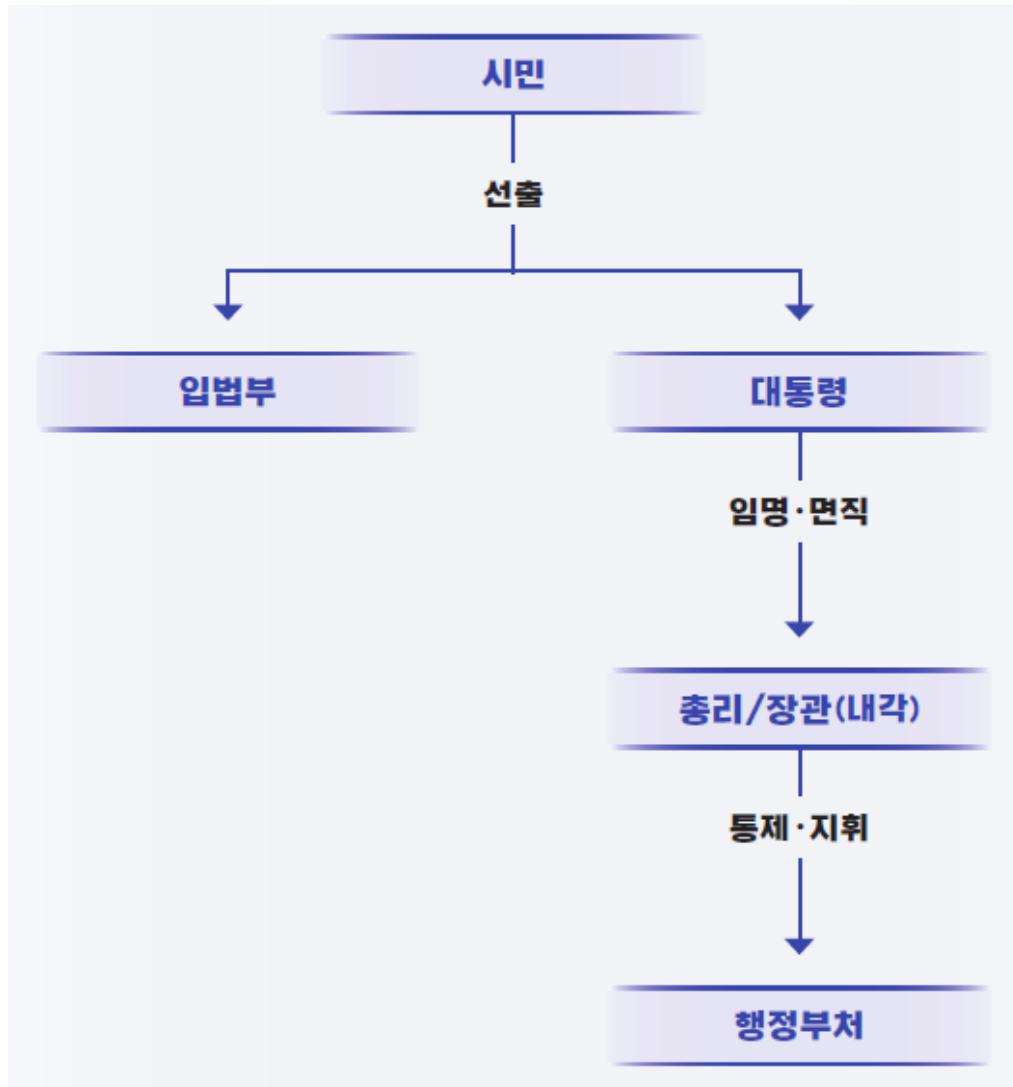
이 문장은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권의 pp.298, 304, 2권의 pp.380-381의 내용을 로버트 달(Robert A. Dahl)이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Robert A. Dahl. 2002.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박상훈, 박수형 역.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p.168.

-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이 곧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님
 - 1649 크롬웰의 청교도혁명?
 - 1789 프랑스 혁명?
 - 1917 러시아 혁명?
- ‘다수의 압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설계
 - 경쟁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 권력 분립
 - 지방 분권
 - 헌정 주의 (constitutionalism, 입헌민주주의): 위헌법률심판 + 권한쟁의 심판 + 기본권 보호
 - ✓ 사법부, 다수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헌법 위반하는 다수결 민주주의 구속
 - ✓ 재판관은 선출이 아닌 임명, 임명자인 선출직 보다 긴 임기, 신분보장, 합의제 판결 원칙



- 집정부(political executive)의 장악 방식에 따라 정부형태 구분
 - ✓ 의회제(Parliamentary System), 의원내각제
 - ✓ 대통령제(Presidentialism)
 - ✓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분권형대통령제, 책임총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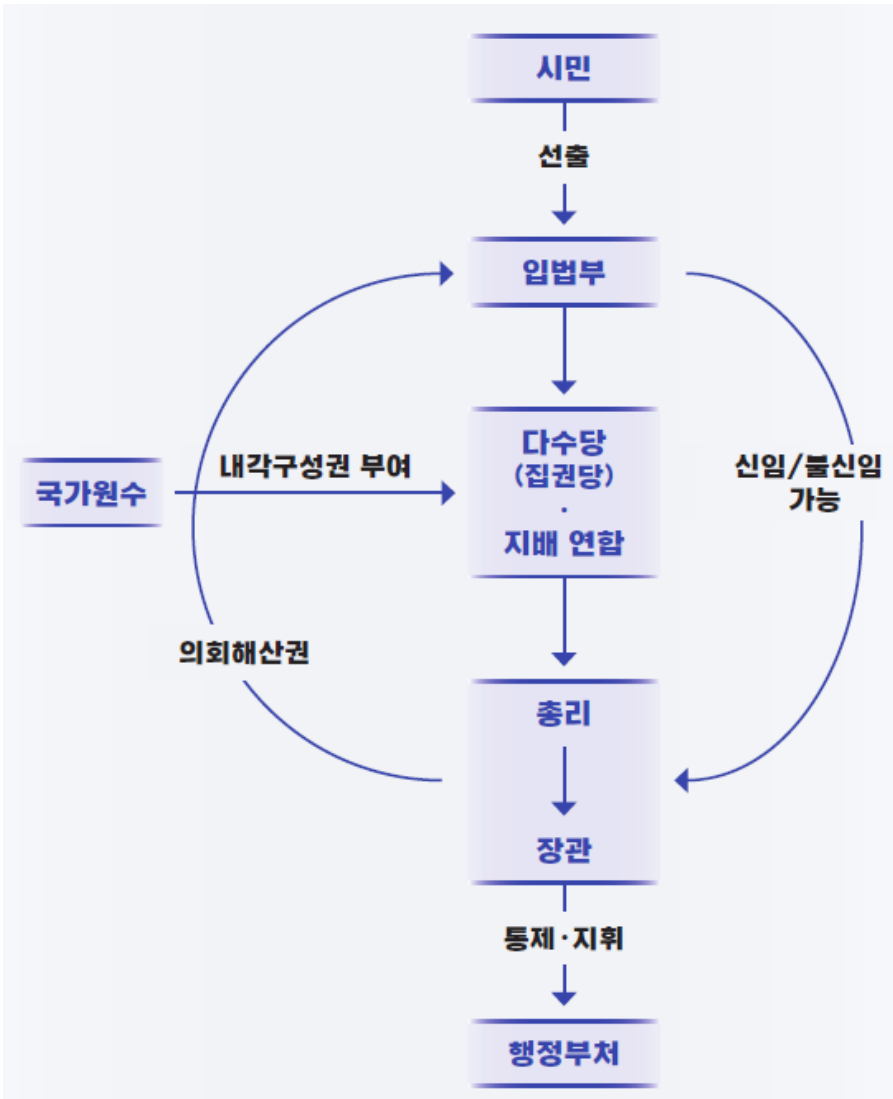
• 대통령제 특징

- ✓ 의회와 별도로 국민의 직접 선거
- ✓ 임기
- ✓ 의회와 독립적으로 내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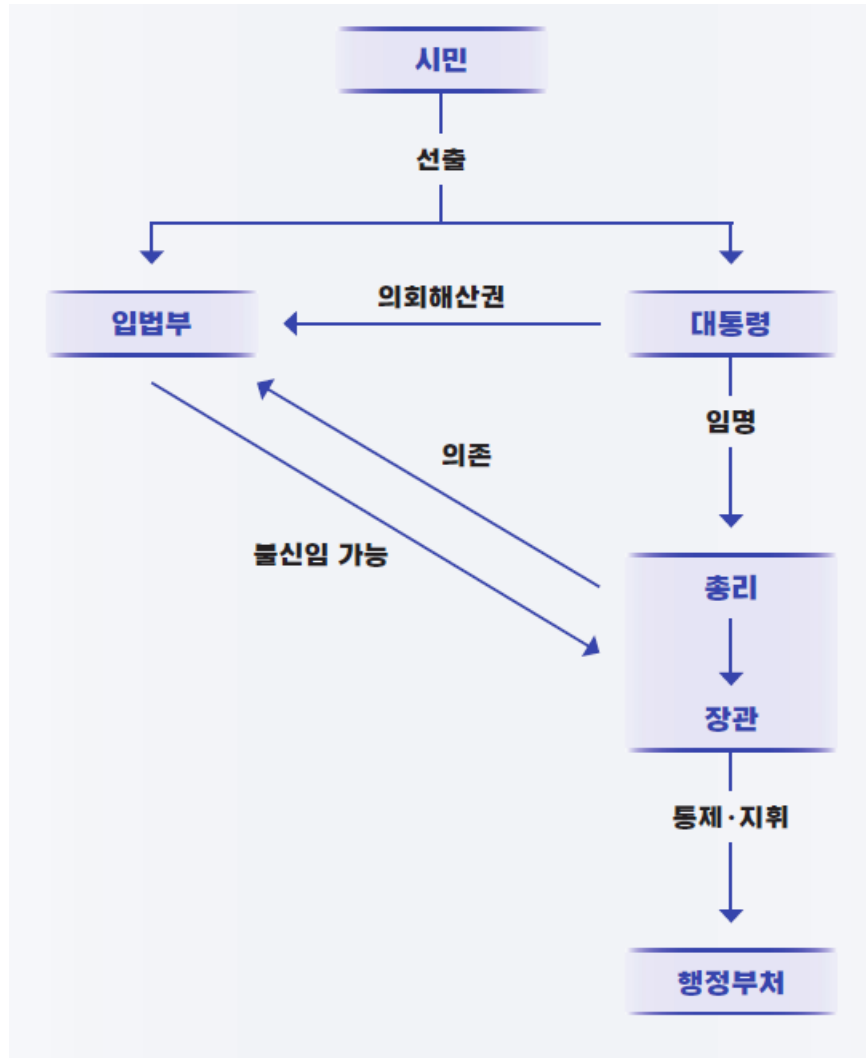
• 이원적 민주적 정통성

- ✓ 여소야대 (분점정부, divided government)
교착 상태 극복이 관건
- ✓ Going Washington + Going Public

• 한국, 제왕적 대통령?



- 권력 융합 + 정부 불안정성? (← 내각불신임 + 의회해산권)
- 총리 임기 유동적
- 정부의 안정성은 정당 체제에 달려있음
 - ✓ 양당제: 웨스트민스터형 (영국)
 - ✓ 온건다당제: 독일형
 - 높은 봉쇄조항(5%)
 - 위헌정당해산
 - 건설적 불신임제
 - 비선제적 의회 해산권
 - junior partner 정당의 캐스팅 보트로 과대 대표 문제
 - ✓ 다당제: 의회우위내각제(assemblyarism/프랑스 4공화국, 전후 이탈리아)
- 왜 强총리, 弱총리?



- 外治는 대통령 + 內治는 총리
- 분권형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
- 약 대통령? + 강 총리?
-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의존적
- 유연한 양두제(flexible diarchy)
- 동거정부 (cohabitation)
 - ✓ 이원적인 민주적 정통성 문제에 기인
 - ✓ 의회의 불신임을 피하기 위한 교육책
 - ✓ 유연한 양두제(flexible diarchy)?
 - ✓ 대통령과 총리의 대립, but 교착상태 x



- 1차: 1986-1988, 좌파 미테랑 대통령 + 우파 시라크 총리
 - 2차: 1993-1995, 좌파 미테랑 대통령 + 우파 발라뒤르 총리
 - 3차: 1997-2002, 우파 시라크 대통령 + 좌파 조스팽 총리
-
- ✓ 2000년 동거정부 발생 가능성 낮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의 줄여 총선과 주기를 일치시킴.
 - ✓ 2024년까지 여소야대 x
-
- 2024년 여소야대 발생, 마크롱 대통령은 동거정부가 아닌 소수 내각 출범 → 계속된 불신임으로 정국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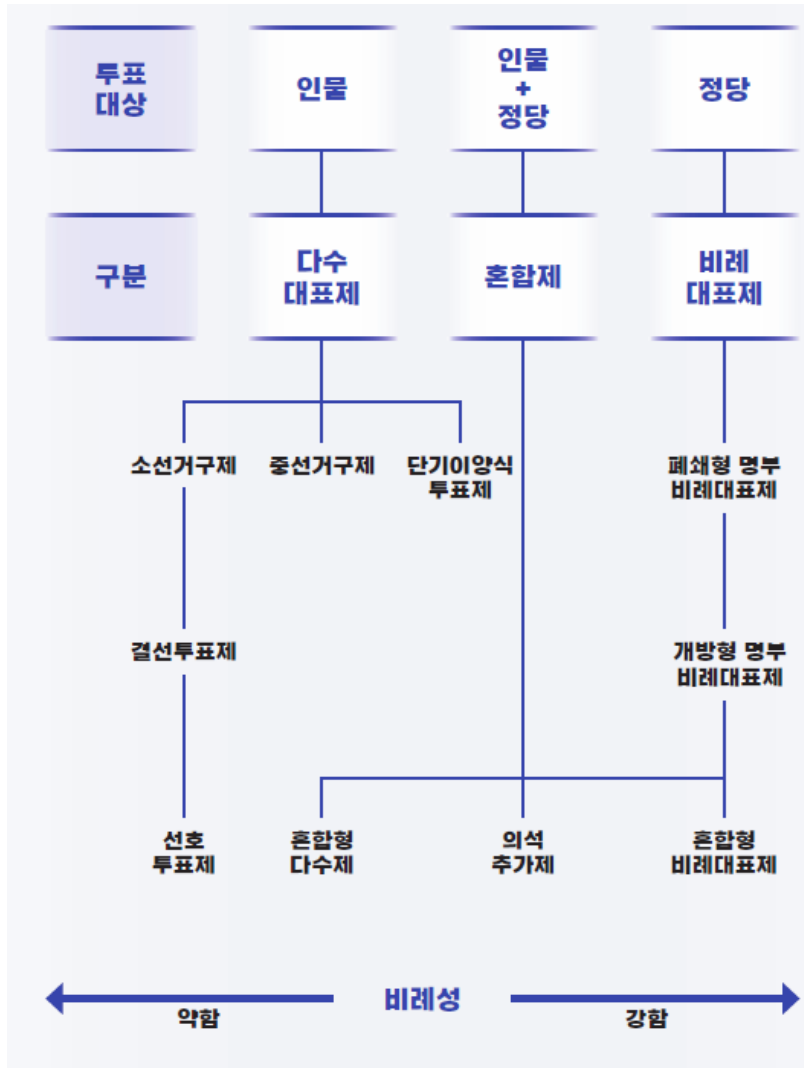
□ 내각제 요소가 내포된 대통령제

-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장관) 겸직
- 국무회의에서 국정 심의
- 총리, 국회동의 필요
-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
- 대통령의 행위에 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서명) 필요
- 미국과 달리, 행정부가 의회에 법률안 제출
- 국회는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 의원내각제 기초 위의 대통령제

- 1948년 제헌의회의 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 양원제
 - 제헌의회 의장이며 당시 최고 지도자인 이승만의 요구로 대통령제로 수정
 - * 내각제 조항 유지한채, 국회에서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 선출
 - *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 삭제
- 1952년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 내각 불신임권 부활 ⇒ 이원집정부제
-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 양원제
- 1961년 5.16 군사정변, 3공화국은 대통령제
 - * 내각제적 요소 유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의원 겸직, 국회 해임건의권, 정부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 1972년 4공화국 유신헌법(+ 1980년 5공화국 헌법)
 - *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비상조치권) 부여
 - * 강한 대통령제, but 내각제적 요소는 그대로 유지

- 대표자 선출은 수천 년간 ‘반장 선거’인 단순다수대표제
- 대중민주주의 시대 정당의 등장, 사람 vs. 사람 --> 정당 vs. 정당
- 승자독식의 다수대표제에서 위기감을 느낀 기존 보수당이 비례대표제로 지분 확보하고자
 - 스웨덴, 남성 보통선거권 도입 조건으로 비례대표제 실시
 - 영국, 보수당이 승리 자신 + 미국, 노동자 정당이 약한 곳은 단순다수제 유지
 - 벨기에 1899, 핀란드 1906, 스웨덴 1907, 독일 1918, 이탈리아 1919....



- 다수제는 인물에, 비례제는 정당에 투표
- 뒤베르제의 3법칙
 - ✓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는 양당제 견인
 - ✓ 비례대표제는 다당제 견인
 - ✓ 결선투표제는 양당주도의 다당제와 정치적 연합을 견인
- 비례대표제의 다당제 견인 정도는 봉쇄조항과 선거구 크기에 달림

□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SMDS, FPTP)

- 1구 1석 인물 투표, 1등만 의회 진출, 사표 다량 발생
- 과반 득표 필요 없기에 실제로는 '소수'대표제
- 승자독식, 경쟁치열
- 지역밀착형 선거 (지역개발 + NIMBY) > 공공정책
- 국고는 공유지의 비극
- 사표방지 심리로 차선에게 투표
- 양당제 건인 (특정 지역 몰표 시, 다당제)
- 1당 (+2당) 과대대표 vs. 나머지 정당, 과소대표
- 게임의 룰 명확, 승패가 명확, 의원과 유대감, 리더십과 책임성 확보 용이
- 영국, 미국, 대부분의 영연방, 한국...

□ 결선투표제 (two-round system, runoff system)

- 1구 1석 인물투표, 1등만 의회 진출
 - 의도적 과반 만들기
 -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 시 당선 확정, 없을 시 1,2등만 2차 투표에 진출
 - 큰 정당은 과대대표, 작은 정당 과소대표
 - 사표 걱정없이 1차 투표, 선거전 합당유인 약화, 작은 정당은 협상카드+지분 확보
 - 양당이 지배하는 다당제 + 정치적 연합 유도
 - 총선(프랑스), 대통령 선거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 * 소선거구제에 의한 양당제 하에서 대통령만 결선투표 시, 연합 정치 기대 어려움. 승자독식 그대로.

□ 중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 SNTV)

- 1구 다석 인물 투표/ 투표자는 1인 1표
- 소선거구제라면 과소대표 될 작은 당 후보의 당선을 용이하게
- 지역구 배정 인원 수 만큼 등수대로 당선 (유사 비례대표제)
- 복수 공천 시, 거대 정당 출현 가능 + 당내 계파 갈등
- 지배정당체제
- 일본

□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 만큼 의석 차지

- 정당 투표
- 선거 전 의원 후보 순번 확정 (closed list, 폐쇄형 명부/ 유권자가 순번 결정 = open list, 개방형 명부)
 - * 개방형 명부: 유권자 선호 반영, 그러나 직능대표성 약화 + 정당 규율 약화
- 정당 득표율에 따라 확보한 의석(할당 의석) 수 만큼, 정당명부 1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의석 부여
- 다당제 견인, 정당간 정책대결, 의원과 거리감

□ 비례대표제의 정당 난립 문제 줄이기

- 봉쇄조항 (문턱, Threshold)
 - ✓ 튀르키예 7%, 독일.벨기에.뉴질랜드 5%, 스웨덴.노르웨이.오스트리아 4%, 스페인.그리스 3%
- 권역별 선거구제

□ 1인 2표

-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회 의석 할당
- 지역구 단순다수제 인물투표 결과, 당선자는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을 우선 차지
- 나머지 의석, 비례대표 후보가 명부 순서대로 차지
- 인물화된 비례대표제
-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의 수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 (연동형 PR)

□ 독일 사례: 초과의원석 문제

- 16개 주(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기에, 초과의원석 발생 가능성
- 원내에 진입하는 정당 수가 늘어나면서, 큰 당을 포함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하향
- 정당득표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1위자는 여전히 큰 당 후보

2023년 선거법 개정 전, 독일의 총의원석수는 598. 지역구는 299. 바이에른 주가 인구비례로 받은 의석은 총 93석. 이중 지역구는 절반인 46석. 바이에른 주 지역구 선거에서 기독교사회연합 45명 당선. 2021년 총선에서 기민/기사연의 전국 정당 득표율은 31.7%. 이에 따른 주 할당의원석은 34석. 지역구 당선자가 11명 초과. 다른 기민연이나 사민당 강제 지역에서도 유사 현상이 발생. 전국적으로 초과의원석이 많이 생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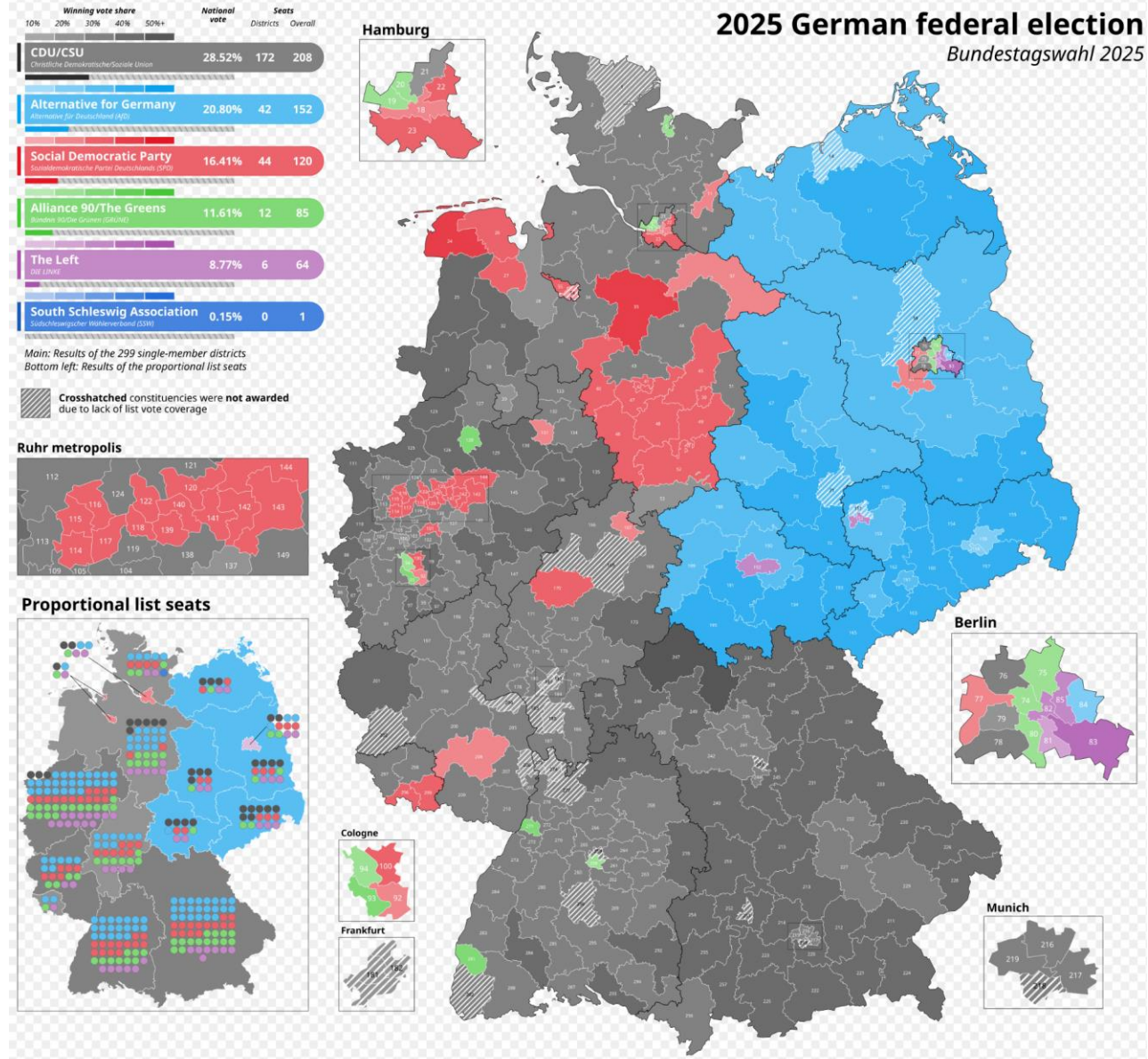
□ 독일 사례: 보정 의석 문제

- 큰 당은 초과의석 덕에 과대대표, 작은 당은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전체적으로 비례성 왜곡
- 이를 방지하고자 2013년 보정의석 도입.
-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에 일치할 때까지 작은 정당에 보정의석 부여.
- 초과의석+보정의석 때문에 전체 의회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17년 의석수가 111명이 더해진 709명, 2021년 137명이 추가된 735명으로 Bundestag(연방하원) 정원이 증가

□ 2023년 선거법 개혁

- 총정원 630명, 초과의석 인정 x (= 보정의석도 불필요)
- 정당득표율로 확보한 의석수를 넘는 지역구 당선자는 불인정.
- 2024년 선거에서 23개 지역구는 ‘고아’지역구 (orphaned constituency, 대표부재 선거구).

5장. 2025년 독일 총선 결과



□ 병립제

- 다수의 소선거구제 + 소수의 비례대표
- 비례대표의 비중에 따라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 완화 효과 다름
- 지역구를 과점하는 큰 정당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큰 몫 차지
⇒ 불비례성 완화효과 제한적

□ 한국 (2016년 까지, 253+47), 일본 (중의원 선거, 289+176), 대만 (79+34)

5장. 혼합제: 의석추가제 (AMS, Additional Member System)

〈의석추가제 예시〉

(총 100석 = 지역구 70석 + 비례대표 30석)

정당명	A	B	C	D	E	F	계
정당 득표율	35%	35%	5%	15%	5%	5%	100%
할당 의석	35석	35석	5석	15석	5석	5석	100석
지역구 당선 의석(a)	40석	20석	10석	0석	0석	0석	70석
초과 의석	5석	-	5석	-	-	-	10석
필요 보정 의석		15석		15석	5석	5석	40석
실 배분 비례 의석(b)*		11석 (11.25)		11석 (11.25)	4석 (3.75)	4석 (3.75)	30석
의석 합계 (a + b)	40석	31석	10석	11석	4석	4석	100석
의석 점유율	40%	31%	10%	11%	4%	4%	100%

* '실 배분 비례 의석(b)' 계산은 최다 잔여표 방식(헤어 방식)을 따름.

- 연동형이라 할 수 있으나, 독일과 달리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비율을 보장하지 않음.
-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 보정에 있어, 정당득표율 이상으로 의석을 차지하는 큰 정당을 배제하고, 제한된 숫자의 비례의석을 작은 정당에게만 보정용으로 추가 제공
- 스코틀랜드 (73+56), 한국 (2020년 21대 국회 이후, 253+47)
-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 위해 큰 당은 위성정당 창당 유혹
 - + 한국은 봉쇄조항 우회하기 위해 연합비례정당으로 선거 참여 후 출당 방식으로 소속 정당으로 복귀

□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 입헌민주주의 (constitutional democracy)

- 사법부, 다수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헌법 위반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구속
- 재판관 선출이 아닌 임명, 신분보장, 선출직보다 긴 임기, 합의제 판결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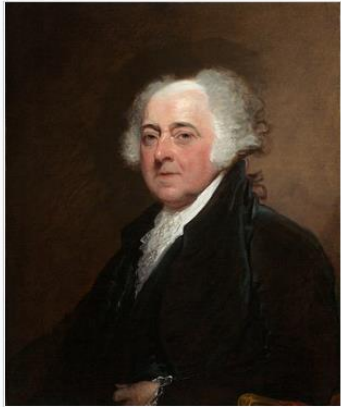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속

- 개인 vs. 집단(다수)
- 자유·해방 vs. 지배·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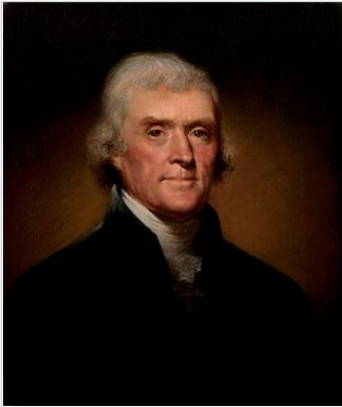
□ 헌법: 전문 + 기본권 조항 + 권력구조 조항

□ 헌법 개정 절차

- 미국: 상하 양원 각각 2/3 동의 + 모든 주 3/4 비준
- 독일: 상하 양원 각각 2/3 동의 + 개정 불가 조항
- 한국: 국회 2/3 동의 + 국민투표 1/2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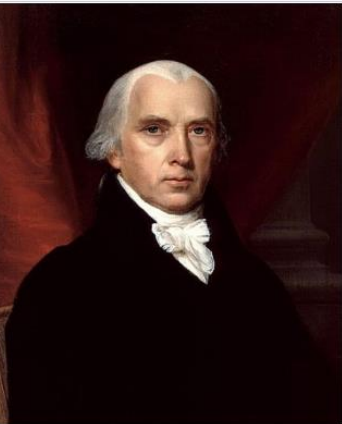
President John Adams, who appointed Marbury just before his presidential term ended.



Thomas Jefferson, who succeeded Adams and believed Marbury's undelivered commission was void.



William Marbury, whose commission Madison refused to deliver.



James Madison, Jefferson's Secretary of State, who withheld Marbury's commission.

□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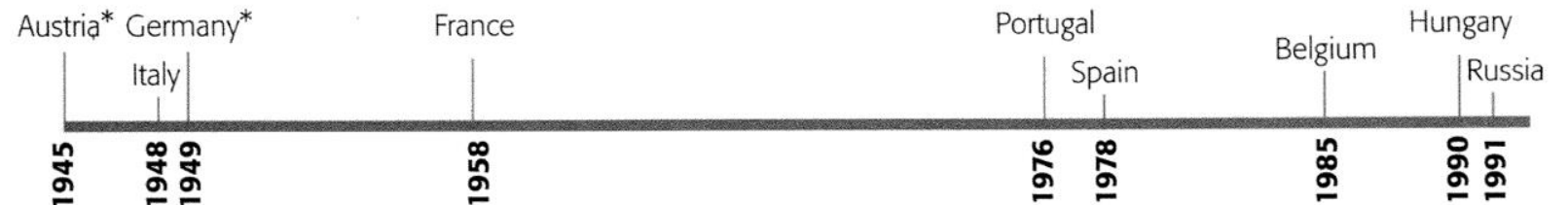
- 입법부의 입법과 행정부의 행정작용의 위헌과 위법 여부 판정
-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법과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
- 법의 지배(Rule of Law).... Not Rule by Law

□ 위헌법률심판

법률로 공표된 입법부의 의사가 헌법에 공표된 인민의 의사와 충돌할 경우에 법관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따라야.... 헌법의 명백한 취지에 반하는 모든 법률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인민이 헌법에] 특정한 권리나 또는 기본권적 권리로 확보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Alexander Hamilton. *The Federalist Papers*. p.578)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나찌당의 일당 독재, Rule by Law

- 반헌법적인 그러나 합법적 독재
- 1933년 수권법 (4년 한시법, 두 차례 연장), 1935년 뉘른베르크 인종법

□ 1949년 독일,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헌법재판소 설치

- 광범위한 위헌법률심사권 (기본권 침해받은 자 + 입법부 소수파에게 청구권)
-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는 제한 (기본법 18조)
- 위헌정당심판권 (기본법 제21조 2항)
- 개정금지조항 (1조의 인간 존엄과 인권에 관한 규정과 20조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사회국가, 연방국가, 법치국가, 저항권의 보장은 개정불가능한 신성불가침 조항)
- 16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 12년
- 투쟁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

□ 사법적 입법 (judicial legislation)

- 미국, 노예제 폐지(1865년 수정헌법 제13조) + 차별금지(1868년 수정헌법 제14조)
- 1896년 Plessy vs. Ferguson 사건: Jim Crow laws, “separate but equal” 논리로 합헌 판결
- 1954년 Brown vs. Board of Education 사건: 흑백분리, 수정헌법 제14조 위반

□ 사법 적극주의 (judicial activism)

- 법률과 행정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헌 판결, 집행정지, 가처분
- 제왕적 사법부? (unelected, unchecked, and unaccountable)
-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

□ 정치의 사법화

- 사법부는 수동적, 의제설정 권한 x
- “다른 수단의 정치”로 사법부를 정치의 장에 끌어드린 결과

□ 사법의 정치화

- 정치 문제가 사법적 판결로 해소되자, 당파성에 따른 재판관 임명 유인
- 판결의 정당성과 승복(수용) 가능성 저하

□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한 헌법 시스템 덕분만은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한다....[이] 규범이란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 그리고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를 말한다... 양당 지도자는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시한부로 주어진 제도적 권리를 오로지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처럼 **관용과 절제의 규범은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연성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당파 싸움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다....[그러나]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 규범 침식은 당파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2018)

□ 헝가리 Fidesz당 Orbán Viktor 총리의 합법적 연성 독재

- 현재 재판관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후, 보수파 임명
- 판사 정년 70세에서 62세로 낮추고 물갈이
- 언론법 개정해 징벌적 벌금제(최대 13억원) + 언론위원회법 개정, 친여언론위원회 + 좌파 성향 방송 허가 취소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선관위 위원 5명은 여당이 나머지 5명은 여.야 합의로

□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렵게 쌓아올린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당파적 양극화는 진영 논리에 팬덤 정치까지 더해지면서 회복 불가능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인 야당의 밀어붙이기 입법과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 문지마 탄핵 남발과 한술 더 뜬 대통령의 제엄 선포, 그리고 아스팔트 정치와 문자 폭탄에 휘둘리고 또 이를 조장하는 여당과 야당을 보고 있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미덕은 찾아 볼 수 없다.

□ 한국 민주주의의 헝가리화 진행

□ 난폭한 차? 난폭한 운전자?

- 권력구조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당제를 벗어나 **온건다당제**로
- 단독 질주를 막고, 양보 운전을 유도해야

□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 양당제 하, 여대야소 때는 제왕적 대통령
- 양당제 하, 동거정부 때는 제왕적 총리 + 국정혼란 (윤석열 대통령 + 이재명 총리)

□ 대통령 중임제?

- 양당제 하, 여대야소 때는 제왕적 대통령
- 여대야소 분점정부 때는 의회와 대립, 교착상태
- 재선 위해 포퓰리즘
- 재선 후 4년은 레임덕

□ 의원내각제?

- 양당제 하, 제왕적 총리 + 사법부 지배로 1당 독재/1인 장기 집권도 가능
- 다당제 하에서는 국정혼란
- 온건다당제 아니면, 시도 말아야

□ 온건다당제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필요

-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지역 200 + 비례 200 = 400석)
- 봉쇄조항, 현행 3% $\Rightarrow$ 5% (연합정당은 10%)
- 권역별인 독일과 달리, 전국 단일 선거구로 초과의석 발생 억제

□ 대통령 결선투표제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온건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은 DJP연합 처럼 2~3개 정당간 연립정부 구성
- 결선투표제로 투표 전 합당 유인 해소, 온건다당제 유지와 정치적 연합 견인
- 2차 투표 전, 작은 정당도 지분을 갖고 큰 정당과 협상 $\Rightarrow$ 연립정부로 연결
- 연립정부 구성으로 승자독식 완화

□ 기타 개혁 과제

- 국회의 탄핵소추권 제한 (탄핵소추 시 즉각적인 직무정지 x, 묻지마 탄핵 가능성 낮추기)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 임명 동의 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중립적 인사 임명 유도

□ 개혁신당의 정체성 확립

- 안티페미니즘에 기반한 '2030 남자당' 이미지에서 벗어 나야
- 개혁적 보수 →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
 - ✓ 자유시장경제 (독과점 규제, 개방 경제)
 - ✓ 친기업 (기업의 소비인 투자 환경 조성, 노사관계보다 고용 중시)
 - ✓ 자유민주주의 (정치사회의 독과점 해체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아젠다 제시)
 - ✓ 지속가능 복지국가 (국민연금의 적립형 전환과 운용수익금 활용, 의료보장 개혁, 가족정책-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강화)
 - ✓ 양성평등
 - ✓ 친원전 환경주의
 - ✓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 ✓ 북한 문화 개방

□ 정책 정당화 + 정치연합 주도

- 개혁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미래 비전 제시 및 이슈별 대안 제시
- 제2의 '천하용인'으로 이준석 사당 이미지 벗어나기 (여성 정치인 함께하기)
- 지선, 총선, 대선에서 적극적 정치연합

□ 선거제도 개혁

- 2023년 국회 정개특위 안에 대한 입장
 - ✓ 비례대표제 확대
 - ✓ 비례대표제는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일 선거구 유지
 - ✓ 온건다당제 목표로 5% 룰 적용
 - ✓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시, 복수공천 금지
- * 지방선거, 단일 선거구 비례대표제 우선 실시*

□ 헌법 개정

- 독자적인 헌법개정 수정안 발의로 여론전 펼치고 개혁신당 이미지 제고해야
 - ✓ 여당의 전문 개정 수용
 - ✓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는 조건부 수용
 - ✓ 헌법에 결선투표제 + 국회,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추가
 - ✓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위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제한
 - ✓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 제고 위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 임명 동의 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Спасибо **Thank You** Gracias

Grazie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

Merci 谢谢

Obrigado **Danke** Tack



QR 코드



 **Mentimeter**

오늘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ord cloud input

25

25

25

Powered by Mentimeter



연 습





질문

감사합니다